



3) 지정 유효기간

- 최종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함
 - * 다만,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 제공기관의 지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
- 최종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받은 유효기간의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·군·구로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, 신청 받은 시·군·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지정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도록 함
 - ※ 재지정 신청절차는 신규 제공기관 지정신청 절차와 동일함

다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기준

1) 시설규모 및 형태

- 제공기관은 이용자 2명당 16.5m²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하며, 1인 추가시 6.6m²씩 추가 공간 확보해야 함
 - ‘활동공간’이란 9시~18시 동안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용공간을 의미함
 - 사무실, 심신안정실,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
-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위탁, 무료임차, 자가, 전세,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, 전대차 등은 불가능

2) 시설위치

- 제공기관의 위치는 통합돌봄서비스 수요,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,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
- 제공기관의 내·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, 보건·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
-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
 - 출입구, 문,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·이동이 가능하도록 권장함

- 2층 이상에 위치한 제공기관은 승강기,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권장함

3) 시설공간

- **(활동공간)**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함
 - 파티션 등 임시 가림막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
 - 활동공간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창 등을 설치하여야 함
- **(심신안정실)** 심각한 도전적 행동 발생시,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심신안정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
 - 심신안정실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함
 - 심신안정실은 타 사업의 프로그램실과 겸용 불가능
 - 심신안정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여야 함
 - 바닥 및 벽면에는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를 권장함
 - 행동관찰을 위한 분리된 관찰실 혹은 투명창 설치를 권장함
 -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함

다감각 교구 활용

- 청각자극: 천정형 스피커 설치, 개인용 음향물품 등
- 시각자극: 외부 광원 차단을 위한 암막커튼, 천정형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, 실내조명 등
- 촉각자극: 촉각자극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위한 마루형·벽면형 촉각 물품 등

II

서비스 제공기관

- **(사무실)**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
 -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,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·보관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- **(기타 공간)** 화장실, 복도, 보일러실, 창고 등

4) 시설안전

- 제공기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기준(노유자



시설)에 따라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

<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>
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별표 1 제1호가목1)의 소화기를 갖출 것. 이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별표 1 제1호가목1)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
-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별표 1 제1호라목1)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,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)번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(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)를 설치해야 함
-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m² 이상인 경우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, 400m²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
-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301)」 표2.1.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
-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

II

서비스 제공기관

- (영상정보처리기기)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(영상정보처리기기)를 설치하여야 함
 - 반드시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cctv 설치의 목적과 촬영장소 등을 안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
 -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·운영이 허용됨
 -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이 금지됨
 -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,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
 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
 -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



라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기준

1) 인력기준

-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, 서비스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

2) 자격요건

● 시설장(관리책임자)

-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- 1)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
- 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3) 「의료법」 제2조의 의료인
- 4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5)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6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7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

● 행정인력 및 제공인력

-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~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.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(1급. 2급)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에 따른 양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4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5)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
- 6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- 7) 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8) 1)부터 7)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9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

● 통합돌봄 서비스 시설장과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함

※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,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

●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:1 매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

3) 결격사유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4) 결격사유 확인

II

서
비
스
제
공
기
관



결격사유	결격사유 확인
정신질환자	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특정 연령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자료 활용
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	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※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	사법기관(법원)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※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가정법원)로 확인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	범죄경력조회 회신서 ※ 단,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[서식 39호] 대체 가능
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	범죄경력조회 회신서 ※ 단,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[서식 39호] 대체 가능

마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

1) 제공기관 정보관리

- (신규 지정) 제공기관 지정 후 지정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송
 - 시·군·구 담당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된 제공기관의 정보를 전송하며, 지역센터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정보를 게시
- (변경 지정)
 - 시·군·구 담당자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송
 - 지역센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관정보 수정

2) 중요사항의 변경지정

-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지정 신청서[서식 33호]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
- 다만,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및 소재지(주소) 변경시